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8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해식 · 진선미 · 차지호
남인순 · 한준호 · 김남근
박주민 · 임미애 · 박정현
권철승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를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도”를 “제1항에도”로,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을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u>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② <u>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 -----<u>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p> <p>② -----<u>제1항에도</u>----- ----- ----- ----- ----- -----<u>활동기간을 3개월</u>----- -----.</p>